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자주하는 질문(FAQ)

2026. 8.



국민이 신뢰하고 감동하는 시험평가기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KOREA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INSTITUTE

실기시험 전반에 관한 사항

(I)

Q1. 실기시험은 어떤 시험이고 세부 평가내용을 알 수 있나요?

치과의사 실기시험은 신규 치과의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임상수행능력인 병력 청취, 구강 내·외부 진찰, 환자와의 의사소통, 진료태도 및 기본 기술적 수기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치과의사 실기시험 문항별 평가항목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시원 홈페이지에 있는 ‘치과의사 국가시험(실기) 평가목표집’을 참고하기 바랍니다.(국시원 홈페이지-[시험정보]-[직종별 시험정보]-[치과의사 실기]-치과의사 실기시험 평가목표 배너에서 확인 가능)

Q2. 실기시험 시 복장 제한이 있나요?

시험 중 복장은 본인이 지참한 가운을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과정평가 시험 수행 시 가운은 자켓 또는 반팔 형태를 착용하고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응시자의 소속 대학 또는 병원 등이 가운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 시험평가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국시원에서 지급하는 스티커 등으로 가려야 합니다.

아울러, 장비 및 도구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 예방을 위하여 (맨발)슬리퍼, 반바지 등의 노출 차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Q3. 개인별 시험장소 및 입실시간은 언제 알 수 있나요?

실기시험 접수가 완료되고 응시자 배정이 끝나면 국시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개인별 시험장소, 시험일, 입실시간(배정 사이클)을 공지합니다.

공지사항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국시원 홈페이지 - 응시표 출력
- 2) 응시자 개별안내 SMS 발송(응시원서 접수 시 기재한 휴대폰 번호)

Q4. 개인별 시험장소 및 입실시간 공지 후, 시험장소나 시험일 변경이 가능한가요?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 시험장소와 시험일(입실시간)은 변경이 불가합니다.

Q5. 결과평가 시험에 결시(기권)한 자가 과정평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나요?

결과평가 결시(기권)한 응시자의 경우 과정평가 응시는 불가합니다.

Q6. 시험 중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나요?

시험실에 입실하면 화장실에 갈 수 없습니다. 시험시간 중 배탈·설사 등으로 더 이상 응시할 수 없는 경우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퇴실한 시험실에 재입실은 할 수 없습니다. 시험실 이동 전 응시자대기실에서는 본부직원의 안내에 따라 화장실 이용이 가능하니 시험실 입실 전 화장실 이용을 권고합니다.

Q7. 실기시험에 합격하고 필기시험에 불합격하면 다음 회차 국가시험은 필기시험만 응시해도 되나요?

치과의사 시험방법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고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어느 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그 시험을 면제합니다.

Q8. 실기시험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응시자들은 대기실로 입실하여 신분확인을 받고 시험 진행에 관한 교육을 받습니다.

[결과평가]

시험실 내 배정받은 번호에 따라 좌석이 지정되어 있고 지정된 좌석에서 3문제를 모두 응시하게 됩니다. 단, 장비 불량 등의 경우에는 정상 작동하는 예비 좌석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과정평가]

시험센터로 이동하여 배정받은 번호에 따라 1(진료), 2(수기), 3(복합) 문항 순서로 3문제를 모두 응시하면 시험이 종료됩니다.

[공통]

시험 진행에 관한 안내는 국시원 홈페이지에 있는 ‘응시자 안내 동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국시원 홈페이지-[시험정보]-[직종별 시험정보]-[치과의사 실기]-응시자 유의사항 탭 2. 유튜브-한국보건 의료인국가시험원 채널에서 확인 가능)

Q9. 시험문제는 누가, 어떻게 채점하나요?

치과의사 실기시험은 다음의 기준으로 위촉된 채점위원이 채점합니다.

- 1) 대학에서 해당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
- 2) 해당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 3) 기타 해당 분야에 적합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자

다만, 진료·복합문항의 환자-치과의사관계(PDI) 항목은 표준화환자가 채점합니다.

Q10. 실기시험의 합격자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치과의사 실기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치과대학 교수로 구성된 합격선 심의위원회에서 ‘문제 조합별 총점 기준 합격선’ 이상을 득점하고, ‘통과 문제 수 기준 합격선’을 통과한 자로 합니다.

합격점수의 산출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47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시원 홈페이지-[시험 정보]-[직종별 시험정보]-[치과의사실기]-합격기준 탭에서 확인 가능)

Q11. 시험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나요?

치과의사 실기시험 성적 공개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총점 및 통과문제 수 기준 통과 여부
- 2) 본인 취득 점수 및 통과문제 수
- 3) 본인이 응시한 항목별 합격선, 취득점수, 통과여부

Q12. 채점표, 채점기준은 왜 비공개 하나요?

실기시험의 채점표와 채점기준(check list)은 응시자가 해당항목에서 수행해야 하는 내용을 평가요소로 정리한 것으로, 공개할 경우 응시자들이 채점기준의 평가내용만을 기준으로 실기시험을 준비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실기시험 시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비공개합니다.

다만, 응시자들이 실기시험을 원활히 준비할 수 있도록 평가목표와 구체적인 평가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치과의사 국가시험(실기) 평가목표집’을 발간하여 공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시원 홈페이지-[시험정보]-[직종별 시험정보]-[치과의사실기]-치과의사 실기시험 평가목표 배너에서 확인 가능)

Q13. 시험 시간을 초과하면 불합격인가요?

시험 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시험 종료 시간까지 수행한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만 채점결과가 인정됩니다. ‘시험 종료’ 구령에도 불구하고 퇴실을 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술기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시험을 0점 처리하므로, ‘시험 종료’ 즉시 시험을 중지해야 합니다.

Q14. 이의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치과 의사 실기시험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1) 시험 응시 당일 해당 사이클 내(결과평가: 시험실, 과정평가: 실기시험센터 퇴장 전)
 - 시험 종료선언 전까지 본부직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시행본부에서는 이의제기한 내용에 대해 검토하여 검토결과를 안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검증되어야 하는 실기시험의 특성상 이의신청은 해당 사이클 내에 제기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 실기시험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채점위원이나 표준화환자가 응시자의 이의제기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고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사이클이 종료되기 전까지로 이의제기 기간을 제한하는 것을 양해 바랍니다.
- 2) 합격자 발표 이후 국시원 홈페이지 이의신청 게시판
 - 이의 신청 기간은 합격자 발표일 이후 5일 이내(발표일 포함, 18시까지)입니다. 이 기간에는 ① 점수 산출과정 중 전산오류 ② 합격여부에 대한 오류 ③ 실기시험 진행과 관련된 기타 명백한 오류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접수된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이의심사위원회 검토를 거쳐 검토결과를 안내합니다.

Q15. 시험장에 꼭 가져가야 하는 응시자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시행 계획 공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응시자는 시행계획에 공고된 준비물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시행계획 공고는 시험 90일 전 국시원 홈페이지-[고객소통]-[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16. 실기시험 중 개인물품(통신·전자기기, 장신구, 물통 등)을 소지할 수 있나요?

시험 중에는 어떠한 통신·전자기기(휴대전화기, 스마트워치, 전자사전, AI 스마트안경 등) 및 개인 휴대물품(손목시계, 장신구 등)도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 당일 응시자대 기실에서 안경 착용자를 대상으로 AI 스마트안경에 대한 전수 검사가 진행됩니다. 또한,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등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시험실 내에 소지한 것이 발견될 시에는 부정행위 처리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Q17. 시험 진행 중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이 마련되어 있나요?

실기시험 진행 중 응급상황 발생 시 본부직원은 상황별 매뉴얼에 따라 대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응시자는 응급상황 발생 시 본부직원의 안내에 따릅니다.

Q18. 실기시험에 장애 및 임신 등의 사유로 인한 편의제공이 가능한가요?

편의제공이 필요한 응시자는 응시원서 제출 시 또는 시험 20일 전까지 편의제공을 신청할 수 있으며, 편의제공대상자 지정신청서와 의사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서류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편의제공대상자 지정여부 및 편의제공 범위를 심사하여 알려드립니다.
기타 편의제공 관련 안내는 치과의사 실기시험 편의제공 사례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시원 홈페이지-[시험정보]-[직종별 시험정보]-[치과의사 실기]-편의제공 대상자 사례집 배너에서 확인 가능)

Q19. 시험실에 시계가 비치되어 있나요?

결과평가 시험 시행 중에는 개별 모니터로 남은 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부요원이 ‘종료 10분 전’과 ‘종료 5분 전’에 안내합니다.
과정평가 시험 시행 중에는 시험실마다 시계가 비치되어 있어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실 시계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방송으로 안내하는 ‘종료 2분 전’, ‘시험 종료’ 안내를 참고하여 시간을 배분하시기 바랍니다.

결과평가 관련 사항 (Ⅱ)

**Q1. 결과평가 실습실이 대학마다 구축시기 및 성능의 차이가 있는 등 처한 상황이
다릅니다. 특히 시설이 노후화된 시험장의 경우 매우 불안합니다.**

국시원은 대학별 시설 확인을 위하여 시험 전 시설 사전점검을 요청하고 시험전일과 시험 당일 장비 전문 요원을 각 대학 시험장에 파견하여 정상 구동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시자가 시험 전 장비를 직접 점검하고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시험 중이라도 응시자가 장비에 이상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 전문위원이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여분 좌석으로 교체하도록 매뉴얼화 되어 있고 장비오류 대처에 따른 추가 시간을 부여하는 등 응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히 조치하고 있습니다.

Q2. 지참할 수 있는 물품에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행 계획 공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응시자는 시행계획에 공고된 준비물 이외의 물품을 소지한 때에는 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며, 준비물 이외의 물품을 사용한 때에는 부정행위로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향후 시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3. 결과평가 필수 준비물 중 가운은 어떤걸 준비해야 하나요?

결과평가의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응시자는 팔, 다리 등 피부가 직접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반팔형태의 가운 또는 실습복은 착용하실 수 없으며, 흰색 긴팔 가운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Q4. 루페를 지참하려고 하는데 보안경도 착용(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안경은 결과평가에서 응시자의 눈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준비물입니다.

보안경은 고글, face shield, 안경을 포함하며, 시험 중 착용은 필수입니다.

따라서 안경 또는 보안경 착용 후 루페 사용이 가능하며, 눈을 보호할 수 없는 단순 루페의 경우 사용이 불가합니다.

Q5. 보존 영역 평가 시, 우식 재현 치아로 시험을 진행하나요?

결과평가에서 활용하는 인공치의 규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덴티폼에 고정 및 분리가 가능하며, 고속 및 저속용 절삭 기구로 삭제 및 근관치료가 가능한 인공치(우식 재현치 포함)

세부사항은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결과평가(‘나’형) 장비(모형) 변경 공지[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공고 제 2024-4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시원 홈페이지-[고객소통]-[공지사항]탭에서 확인가능)

Q6. 우식 재현 치아 제작 공정상의 문제로 우식이 터무니없는 위치까지 있다면 어떤 대처가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식 병소 재현 치아에 대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 확인하고 있으나 시험 당일 시험 물품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이 확인하고 응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합니다.

Q7. 마네킨에 석선틱을 꽂은 상태에서 실기시험을 진행해도 되나요?

결과평가 시험의 경우 응시자의 결과물을 토대로 평가합니다. 다만 마네킨을 실제 환자라고 가정하고 응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환자에게 할 수 있는 술기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8. 보철 영역의 경우 임시치아 제작까지 평가에 들어가나요?

치과의사 실기시험 문항별 평가항목에 대한 세부사항은 ‘치과의사 국가시험(실기) 평가 목표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목표 21과 22번 항목에서 명시하고 있는 임시치아 관련 사항은 평가범위에 해당합니다.

(국시원 홈페이지-[시험정보]-[직종별 시험정보]-[치과의사 실기]-치과의사 실기시험 평가 목표 배너에서 확인 가능)

Q9. 만약 임시치아를 제작해야 한다면 임시치아 재료들이 응시자 별로 지급이 되나요?

국시원에서 문제해결에 필요한 소모품을 각 응시자에게 지급하며, 응시자는 지급 받은 소모품만 사용해야 합니다.

Q10. 임시치아 제작 시 Putty 사용이 가능한가요? Putty 모형을 미리 제작할 수 있나요?

국시원에서 Putty를 개별 제공하고, 필요 시 추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용물품에도 별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Putty 모형 제작의 경우 시험 시간 내에 진행하여야 합니다.

Q11. 임시치아 제작 시 대합치가 물리지 않아 제작이 어려운데 대처방안이 있나요?

모형 자체의 한계 상 평가할 수 없는 항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후 반영할 수 있지만 실기시험은 주어진 환경 내에서 수행하여야 합니다.
결과평가 시험 중 덴티폼을 본부직원의 지시 없이 마네킨에서 분리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으니 임의로 분리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12. 평가기준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나요?(bevel 수치, 근관치료 치아 삭제량 등)

실기시험의 채점표와 채점기준(check list)은 응시자가 해당항목에서 수행해야 하는 내용을 평가요소로 정리한 것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Q13. 시험 중 자세가 중요한 평가요소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결과평가 시험 중 자세로 인한 감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세부 기준	조치
마네킨	• 마네킨의 상체가 수평보다 낮아져 있는 경우 • 상악 교합 평면과 수평 바닥면이 이루는 각도가 70도보다 작은 경우 • 마네킨의 얼굴을 좌·우로 지나치게 회전(60도 이상)시켜 진행하는 경우	(1회) 경고 (2회) 20점 감점* (3회) 결과평가 모두 0점 처리
술자	• 개인보호장구를 미착용하고 진행하는 경우 • 마네킨 가슴에 물품 등을 올려놓는 경우 • 마네킨의 눈, 코 등 부위에 불필요한 압박접촉하며 수행하는 경우 • 마네킨의 목, 가슴 또는 테이블에 팔(팔꿈치)로 지지하며 수행하는 경우	

* 3개 시험 문제 중 응시자의 취득점수가 가장 낮은 시험 문제에 감점을 적용
- 단, 취득 점수가 감점점수보다 낮은 경우 해당 시험 문제를 0점 처리함.

* 시험문제별 총점 100점 기준에서 감점 적용.

Q14. 비현실적인 자세 등의 감점은 어떤 걸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치과의사 실기시험 결과평가에서 비현실적인 자세로 응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감점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행계획 공고 내 결과평가 감점적용 기준 참고]
비현실적인 자세로 응시하는 행위에 대해서 예시 자료를 별첨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시험과정 중 감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5. 지정된 치아가 아닌 다른 치아를 삭제했는지 여부는 어떻게 검사하나요?

결과평가 시험 중 지정된 치아가 아닌 다른 치아 삭제에 따른 감점기준은 다음과 같고, 각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채점위원 간 협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합니다.

1. 다른 치아를 손상하는 행위

구분	지정 치아	손상 치아
지정된 치아를 치료하지 않은 경우	100점 감점	-
지정된 치아를 치료했으나 다른 치아를 손상시킨 경우	채점기준에 의거 채점	아래 표의 감점 기준 적용*
지정된 치아 인접치의 인접면을 손상시킨 경우	-	채점기준에 의거 채점

* 시험문제별 총점 100점 기준에서 감점 적용.

※ 다른 치아의 손상 정도에 따른 감점기준

감점	감점 적용 기준
30점	손상의 정도가 경미하여 마무리 및 연마로 충분한 경우
60점	단순 수복으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
100점	근관치료, 크라운 수복 등 단순 수복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 다른 치아를 손상한 시험 문제가 특정되는 경우, 해당 시험 문제에 감점 적용
- 다른 치아를 손상한 시험 문제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3개 시험 문제 중 응시자의 취득 점수가 가장 낮은 시험 문제에 감점 적용
- 단, 취득 점수가 감점 점수보다 낮은 경우 해당 시험 문제를 0점 처리함.

Q16. 덴티폼에 문향과 무관한 부위에 손상 발생 시 어떻게 증명하여 해결하나요?

응시자는 시험실에 입실하여 덴티폼을 사전에 검수합니다.
시험 문제와 무관한 부위의 치아나 치은 조직에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손을 들어 의사를 표현하면 전문위원이 확인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Q17. 시험 중간에 핸드피스, 마네킨, 석션, 튜빙 주수불량 등 장비이상 발생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핸드피스는 응시자가 필수로 준비해야 하는 물품입니다. 이에 따라 응시자 지참물품 불량으로 인한 조치에 따른 추가시간은 부여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에 본인이 지참한 물품 작동여부 및 관리 상태를 점검하기 바랍니다.

시험장 장비(마네킨, 석션, 튜빙 주수 등) 불량인 경우 전문위원이 확인한 후 필요 시 여분좌석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장비이상으로 인한 조치에 소요된 시간은 추가시간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장비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응시자는 손을 들어 정확하게 오류발생에 대한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Q18. 시험 시간 중 bur가 빠지지 않을 경우, 도움을 주나요?

시험에 동원되는 모든 인력은 응시자의 시험 진행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단, 물품 불량으로 인한 것이라 판단되는 경우, 응시자는 손을 들어 본부직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Q19. 결과평가 시험 중 응시자 이동 시 다른 응시자에게 방해가 되는 경우 제재를 하나요?

시험 중 이동은 공용물품 추가 수령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동 시 다른 응시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동하여야 하고, 시험 진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습니다.

Q20. 결과평가 시험 중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시험 진행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관련 물품을 소지한 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나요?

시험 진행에 불필요한 물품의 경우 시험실 내 반입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보안경 사용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충분히 할 것을 권고합니다.

Q21. 결과물 채점 시 해당치아를 덴티폼에서 분리하여 평가하는지, 장착된 상태로 평가하는지 궁금합니다.

결과물 채점 작업 시 채점위원 간 사전 동등화 등 사전 회의에서 필요에 따라 평가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항은 문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Q22. 텐티폼 치간에 밴드가 끼워지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 인접치아 손상 방지를 위해 매트릭스 밴드를 2개 끼워도 상관없나요?

실기시험은 주어진 조건 내에서 수행하여야 합니다. 국시원에서 제공하는 물품은 동일한 조건이므로 band 장착 등 수행방법에 관한 사항은 응시자가 판단합니다.

Q23. 루페 라이트를 일반 안경에 착용해도 되나요?

루페 라이트를 일반 안경에 착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메라 및 기타 전자·통신기능이 추가된 루페는 소지 및 사용이 불가합니다.

과정평가 관련 사항

(Ⅲ)

Q1. 과정평가 시험의 응시자 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과정평가 시험은 응시인원에 따라 시험기간이 정해집니다. 시험기간 동안 응시자는 무작위 배정을 통하여 배치되며, 응시자는 시험기간 중 국시원에서 지정한 시험일에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배정된 시험일자 및 cycle은 응시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Q2. 시험실 내에 영상 정보 처리기를 통한 촬영 목적은 무엇인가요?

시험실 내 영상 정보 처리기를 통한 촬영은 실기시험의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 등을 목적으로 촬영한 영상물로서 시험운영 종료 후 즉시 폐기합니다.
아울러, 이 영상자료가 시험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5호가 정하는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합니다.

Q3. 시험실 배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험실 배치는 01번 시험실 - 진료문항, 02번 시험실 - 수기문항, 03번 시험실 - 복합문항입니다.

Q4. 과정평가 시험실 내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모든 시험실에는 채점위원 1인이 있습니다. 1번(진료문항)·3번(복합문항) 시험실에는 표준화환자 1~2인과 필요에 따라 도우미가 배치될 수 있습니다.
모든 시험실에는 유닛체어가 배치되어 있으며, 시험실별로 시험에 필요한 물품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준비 물품은 모든 응시자에게 동일하게 배치하지만 응시자가 시험 중 배치를 변경하여도 무방합니다.

Q5. 기본물품으로 제공하는 글러브 관련 사항이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는 XS, S, M, L 네 가지 크기의 파우더 없는 라텍스 글러브를 각 시험실 공용물품 테이블에 준비합니다.

Q6. 시험 중 장비가 파손되면 시험 진행은 어떻게 하나요?

시험 중 장비 고장, 오작동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시험을 진행하고 시험실 퇴실 후 중앙 복도에서 진행요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후의 시험 문제까지 정상 진행한 후에 해당 사이클 종료 시 본부직원이 처리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Q7. 모든 응시자에게 시험문제는 동일한가요?

과정평가의 경우 시험 기간 중 일정 수의 문항세트로 운영합니다. 유형별 세부문항은 문항세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Q8. 시험문제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험문제는 각 시험실 입구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시험실 입실 전 1분 동안 시험문제 확인시간이 있고, 시험실 입실 전 확인한 문제는 시험실 내에도 비치되어 있으므로 입실 후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9. 표준화환자의 답변은 표준화 되어 있나요?

표준화환자는 문항별 시나리오와 여러 상황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응시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Q10. 인사, 자기소개, 검사, 진단, 치료계획 등등 각 항목별로 점수배점이 어떻게 되어있나요?

진료과정 각 항목별 배점은 문항별로 차이가 있으며, 세부 평가항목별 배점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Q11. 소속을 밝힐 수 없다면 시험실에 입실하여 자기소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자기소개는 실제 진료 환경을 가정하고 표준화(모의)환자에게 실시합니다. 이름과 역할은 포함할 수 있지만, 본인의 소속은 밝히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시험문제에 별도의 지시사항(ex. 채점위원을 보호자라고 가정하고 주의사항을 설명하시오.)이 없다면 채점위원에게는 자기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Q12. 진료·복합문항 시험 진행 시 표준화환자와 대화하면서 메모를 할 수 있나요?

진료문항 및 복합문항 시험실 내에는 시험 중 차팅 등을 할 수 있도록 메모용지 및 필기구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메모 용지나 필기구 등은 시험실 밖으로는 가지고 나갈 수 없고, 시험실 내에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Q13. 펜을 사용해야 한다면 감염관리를 위해 사용할 때마다 글러브를 벗어야 하나요?

시험실 내의 마우스, 상황지침판, 메모판, 볼펜은 라텍스 글러브 착용 상태에서도 사용 가능한 물품이므로 해당 물품은 글러브를 벗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실 내에 비치되어 있는 필기구 사용 시, 검사결과지를 확인하기 위한 마우스 조작 시 글러브를 벗거나 교체하지 않아도 됩니다.

Q14. 진료·복합문항에서 “○○○ 검사를 하겠습니다.”라고만 해도 결과를 주나요? 아니면 필요한 기구를 잡고 덴티폼에 술기해야 결과지를 받을 수 있나요?

검사결과는 응시자가 표준화 환자에게 어떠한 검사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경우에 채점위원이 제공합니다. 다만, 문제에 특정 술기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거나 채점위원에게 특정 술기를 확인받도록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술기를 진행 또는 확인받아야 합니다. 다만, 문제해결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검사결과는 “기타 검사결과 -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공됩니다.

Q15. 진단 시 명확한 의학용어(치근단농양, 관절원판 변위)를 사용하지 않고 환자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만 설명 시 감점요소인가요?

진단명의 경우 채점위원이 불명확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항목의 득점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명확한 진단명을 사용할 것을 권고해드립니다. 다만, 환자가 이해할 수 없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환자-치과의사관계(PDI)에서 감점 적용될 수 있으니 전문용어는 쉽게 풀어 설명해야 합니다.

Q16. 사전 제시자료에 대해서도 검사를 한다고 언급을 해야 하나요?

미리 제시되어 있는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사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해당 검사를 수행한다고 언급하지 않고 시험을 진행하면 됩니다.

Q17. 복합문제는 환자와 마네킨 중 누구를 대상으로 면담하고 술기를 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면담은 표준화환자(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마네킨에 술기를 수행할 때는 마네킨을 환자라고 가정하고 수행하면 됩니다.

Q18. 표준화환자가 없는 수기문제의 경우 모의환자 또는 모형에 술기 진행 시 “어떤 술식을 진행한다.” 등의 말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말없이 술기만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문제에서 치료계획 및 주의사항 설명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사항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술기만 진행하면 됩니다.

Q19. 진단명 및 검사 결과를 환자에게 설명하다가 누락한 임상검사 항목이 생각나는 경우, 그때 말해도 점수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진료순서에 따라 시험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진료순서와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는 술기에 대해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득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20. 덴티폼 등을 여러 응시자가 사용하면 늦게 응시할수록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의 모형을 사용하게 되지 않나요?

시험에 투입하는 장비의 경우, 필요 시 물품별 교체시기를 명시하거나 채점위원이 확인하여 필요 시 다른 물품으로 교체하여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